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[별표 3] <개정 2021. 9. 27.>

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(제8조 관련)

1.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·약제 및 치료재료
   가. 쌍꺼풀수술(이중검수술), 코성형수술(융비술), 유방확대·축소술, 지방흡인술,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
   나. 사시교정, 눈골격 격리증(두 눈을 감싸고 있는 뼈 사이가 정상보다 멀리 있는 질환)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
   다. 씹는 기능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(턱얼굴) 교정술 및 교정치료
   라.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흉터복원 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흉터제거술
2. 다음 각 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·약제 및 치료재료
   가.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
   나. 주근깨·다모(多毛)·무모(無毛)·백모증(白毛症)·딸기코(주사비)·점(모반)·사마귀·여드름·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
   다.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(phimosis)